평창군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 269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김광성, 남진삼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인 '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' 양성교육에 부합하고자, 우리군 학생의 창의·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조례안의 기본원칙으로 함(안 제4조)
- 나.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및 예산지원(안 제5조)
- 다. 지원사업의 위탁(안 제6조)
- 라.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(안 제7조)
- 마.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계획 홍보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인성교육진흥법」, 「진로교육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4. 4. 8. ~ 4. 29.(20일간)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24. 3. 26.~ 4. 5. 아래표 참고.

원안(의회)	검토안(인재육성과)	검토결과
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1. 문화예술(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)교육 및 체험 사업	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1. 문화·예술교육 및 그 체험사업 (사유- 문화예술의 범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에 따라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)	
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4. 학생의 진로 탐색・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, 진로캠프,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 5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	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4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, 진로캠프, 진로·진학특강 등 교육 사업 5. 기초질서의식 함양과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사업	수용하여 조례안 반영
	(사유-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교육에 부합하 고,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사 업의 범위를 진학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사업이 병행되 어야 한다고 사료됨)	

평창군 창의 ·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학생을 위한 창의·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 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 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,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
 - 2. "창의·인성교육"이란 '창의·인성'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'창의교육'과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'인성교육'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 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·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원칙) 군수는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·장애여부·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·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- 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① 군수는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사업
 - 2.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 - 3. 생명안전 체험 사업
 - 4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, 진로캠프, 진로·진학특강 등 교육사업
 - 5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 - 6.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
 - 7.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
 - 8. 그 밖에 군수가 창의 ·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있다.
- 제7조(연계망 구축) 군수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.
- 제8조(홍보) 군수는 창의·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

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인성교육진흥법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7. 12. 19.>

- 1. "인성교육"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·공동체·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핵심 가치·덕목"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 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.
- 3. "핵심 역량"이란 핵심 가치·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·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.
- 4. "학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다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</u> 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인성교육의 기본방향)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 야 한다.
-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

되어야 한다.

-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,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- 제11조(인성교육 지원 등)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 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(이하 "인성교육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12. 19.〉
- ④ 학부모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,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언론의 인성교육 지원)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언론(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방송,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,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진로교육법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

교 박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문화예술진흥법

제2조(정의)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 2. 17., 2013. 7. 16., 2016. 12. 20., 2018. 6. 12., 2020. 12. 22., 2021. 12. 7., 2022. 9. 27.>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<u>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</u>을 <u>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</u>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사업의 범위 등) ① 군수는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